
2026년도 전국 안전인 대회 포상 계획

2026. 10.

[사]대한산업안전협회

목 차

1. 목적	3
2. 포상 개요	3
3. 포상 대상자 선발 절차	3
4. 주요 추진 일정	6
5. 주요 평가사항	6
6. 평가 시 주요 항목 및 배점	8
7. 포상 대상자 추천 기준 및 제외 대상	9
 [붙임] 신청서 양식	 13

I 목적

- 산업현장 안전보건 증진 및 안전관리 혁신 등에 앞장서 온 개인 및 단체를 발굴·포상하여 예방 중심 안전문화 확산과 산업계 전반의 자율적 안전역량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

II 포상 개요

① 포상 대상

- '26. 9. 1. 기준,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공적을 쌓은 개인 또는 단체
(개인 부문) 산업현장 안전보건 증진, 안전관리 혁신,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(안전 관계자)
(단체 부문)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·운영, 산업재해 예방, 협력업체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사업장(기업·단체)

② 포상 종류 및 인원

- 포상 훈격 : 고용노동부 장관상
- 포상 규모 : 개인 1명, 단체 1개소
- 시상 일자 및 장소
 - 1) 일시 : 2026. 12. 9. (수)
 - 2) 장소 : 서울 여의도 FKI 플라자 그랜드볼룸(1층)
 - 3) 시상 : 제1회 전국 안전인 대회

III 포상 대상자 선발 절차

① 신청 · 접수

- 접수기간 : 2026. 10. 15.(목) 18:00까지
- 접수처 : 중앙회 기획조정본부 회원서비스부
- 협회 직접 방문 또는 우편(등기) 접수
 - * 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

○ 접수처

- (08380)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12, TP타워 19층
- 문의 : 02-860-7172

○ 제출 방법

- 모든 서류 및 증빙자료는 1)원본서류 2)전자파일(한글, PDF*)로 제출

* PDF 파일 : 서명 또는 날인된 스캔본

- 전자파일 제출처 : taesun1205@safety.or.kr

○ 제출서류

구분	주요 서류
추천기관	포상 후보 추천서 ※ 추천기관장 서명이 필요한 서류 : 포상 후보 추천서, 공적조서, 공적조사표
공통	① 사업자등록증 ② 공적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- (개인 부문만 해당) 재직·경력증명서 ③ 산재요양승인 반려 여부 확인서 - 확인기간 : <u>2024. 1. 1. ~ 2026. 8. 31.</u> ④ 공적 내용에 대해 정량·정성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- 재해예방 활동 실적, 산업재해 감소 성과, 안전보건 경영체계,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, 안전보건 투자·시설 개선, 스마트 안전 기술 활용, 안전보건 교육 및 캠페인 활동, 협력업체 지원, 안전문화 확산 성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※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개인	① 포상 신청서 ② 공적조서(개인) ③ 공적개요 ④ 공적요약서 ⑤ 이력서 ⑥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(정부포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포함) ⑦ 공적조사표(개인)

구분	주요 서류
단체	① 포상 신청서 ② 공적조서(단체) ③ 공적개요 ④ 공적요약서 ⑤ 사업체 개요서 ⑥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(단체) ⑦ 공적조사표(단체)
2차 심사 대상자	공적 요약자료(PPT)

○ 유의사항

가.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른 ‘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(정부포상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포함)’ 등 포상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함

나. 포상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, 미 신고시 포상이 취소될 수 있음

2] 심사

○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수공기간(5년 이상), 결격사유 해당 여부, 제출서류 적정성 등 **적격성을 검토함**

○ 공정성·객관성·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**노사민정학 등 안전보건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** 공정한 심사업무 진행

○ 2차 심사자료 제출

1) 1차 심사 결과 선정된 후보자는 2차 심사를 위한 공적 요약자료(PPT)를 제출하여야 함

2) 1차 심사 완료 후 수상 후보자에게 개별 안내

※ 기한 내 미제출 시 2차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○ 최종 수상자 선정

1) 심사위원단은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수상자를 선정함

- 2) 심사 결과 평가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문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3) 선정 이후라도 허위 공적, 결격사유, 사회적 물의 등 포상 부적격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
IV 주요 추진 일정

- 신청서 접수 : 2026. 10. 1.~ 2026. 10. 15. 18:00 까지
- 공적 심사 : (1차 : 내부 심사위원단) 10월 중
(2차 : 외부 심사위원단) 10월 말
- 노동부 제출·추천 : 11월 초
- 수여식 : 2026. 12. 9.(수), 제1회 전국 안전인 대회

V 주요 평가 사항

① 정량평가

- 산재예방 수공기간, 산재예방 투자실적, 사망 만인율 등 평가

② 정성평가

가. 협업 노력

- 원·하청 간 안전보건 협력체계 구축, 발주·도급 과정에서의 안전 책임이행 등을 통해 산업 전반의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
- 노사의 참여 등 다양한 안전보건 주체의 참여를 통해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하고, 자율적·협력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·운영

나. 산재 예방 노력

- 이주노동자, 고령노동자, 이동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 보호 강화
- 기초 안전보건수칙 준수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산재예방 활동 강화
- 기후위기,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위험 요인 대응
-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등 혁신적인 안전관리 제도 도입·운영
- 유해·위험물질 관리, 정신건강 보호 강화 등 노동자 건강 보호

다. 안전문화 확산

- 홍보·캠페인, 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 프로그램 운영 등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노력

라. 역량 강화

- 수공자 개인의 산재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노력
- 노동자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 지원 노력

VI 평가 시 주요 항목 및 배점

평가대상	평가항목 및 배점	비 고															
개인	- 정량평가 - 산재예방 수공기간(20) - 사망만인율(10) - 정성평가 - 산재예방 기여도(70)	- ※ 수공기간 - 산업안전보건분야별 직접 근무기간 (예시) - 개인 : 안전·보건관리자, 안전 담당 등 역임 기간 - 단체 : 산업안전보건 분야 재해예방 활동 수행 기간 ○ 정성평가 〈산재예방 기여도 평가 항목〉 <table> <tr> <th>구분</th><th>내용</th><th>배점</th></tr> <tr> <td>협업 노력</td><td> - 발주·도급 과정에서의 안전 책임 이행(신설) - 원·하청 간 안전보건협력체계 구축 - 노사공동 안전보건활동 - 대외 유관기관 협업 및 연계 노력 </td><td>20</td></tr> <tr> <td>산재 예방 노력</td><td> - 취약 노동자 보호 강화 - 기초 안전보건수칙 준수 - 새로운 위험요인 대응 - 혁신적인 안전관리 제도 도입·운영 - 노동자 건강보호 </td><td>20</td></tr> <tr> <td>안전 문화 확산</td><td> - 안전의식·문화 확산 노력 </td><td>20</td></tr> <tr> <td>역량 강화</td><td> - 수공자 개인의 산재예방을 위한 역량강화 노력 - 노동자의 안전보건 역량강화 지원 노력 </td><td>10</td></tr> </table>	구분	내용	배점	협업 노력	- 발주·도급 과정에서의 안전 책임 이행(신설) - 원·하청 간 안전보건협력체계 구축 - 노사공동 안전보건활동 - 대외 유관기관 협업 및 연계 노력	20	산재 예방 노력	- 취약 노동자 보호 강화 - 기초 안전보건수칙 준수 - 새로운 위험요인 대응 - 혁신적인 안전관리 제도 도입·운영 - 노동자 건강보호	20	안전 문화 확산	안전의식·문화 확산 노력	20	역량 강화	- 수공자 개인의 산재예방을 위한 역량강화 노력 - 노동자의 안전보건 역량강화 지원 노력	10
구분	내용	배점															
협업 노력	- 발주·도급 과정에서의 안전 책임 이행(신설) - 원·하청 간 안전보건협력체계 구축 - 노사공동 안전보건활동 - 대외 유관기관 협업 및 연계 노력	20															
산재 예방 노력	- 취약 노동자 보호 강화 - 기초 안전보건수칙 준수 - 새로운 위험요인 대응 - 혁신적인 안전관리 제도 도입·운영 - 노동자 건강보호	20															
안전 문화 확산	안전의식·문화 확산 노력	20															
역량 강화	- 수공자 개인의 산재예방을 위한 역량강화 노력 - 노동자의 안전보건 역량강화 지원 노력	10															
단체	- 정량평가 - 산재예방 수공기간(10) - 사망만인율(10) - 산재예방 투자실적(10) - 정성평가 - 산재예방 기여도(70)																

VII 포상 대상자 추천 기준 및 제외 대상

① 추천 기준

- '26. 9. 1. 기준,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공적을 쌓은 개인 또는 단체

② 재포상 제한

- 정부포상(국무총리표창 이상)을 이미 받은 자는 **동일 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·포장 및 정부표창**을 재수여할 수 없음
 - 훈장을 받은 자는 동일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 - 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 - 훈·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 종류의 표창을 다시 받을 수 없음
 - 표창(대통령표창, 국무총리표창)을 받은 자는 동일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 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

③ 재포상 금지 기간

- 정부포상(국무총리표창 이상)을 받은 자는 받은 포상의 **훈종 및 훈격,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*** 동안 정부포상을 다시 받을 수 없음
 - * 포상을 받은 시점(수여일)에서 훈장은 7년, 포장은 5년,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(추천일) 가능
- 장관표창을 받은 자는 수여일로부터 **1년간 재포상이 제한되며, 동일 유공분야는 3년 이상의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재포상 가능**

④ 포상추천 제한

①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

② 형사처분을 받은 자

-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

-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-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③ 「상훈법」 제8조 및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

* 단,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

④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단체 및 기관)과 그 임원

-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10조 및 같은 법 「시행규칙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
- ‘임원’ 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
*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(「사업장 등기부 등본」, 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」을 통해 확인)

*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
- *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- 다만,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,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⑤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(단체 및 기관 포함) 및 그 임원

-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
*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
-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- 다만, 위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⑥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 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 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(기관장)

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3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

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
⑦ 추천일 당시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

* 국세·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(www.share.go.kr)의 e하나로민원(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)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

⑧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7조제7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으로 최근 2회(추천일 기준)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

* 포상 추천일 이전 장애인 의무고용을 충족한 경우는 제외,
고용노동부 홈페이지 「뉴스·소식 - 공지사항」에서 확인 가능

⑨ 사회적 물의 등 유발

-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